

제421회 임시회  
'24. 10. 11.(금)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 3. 제안사유

○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4. 기관별 출연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계				
1	충북 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823,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필요	188,675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5. 기관별 주요내용

###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82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89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

## 6. 검토의견

## 1] 충북연구원

### 가. 충북연구원 현황

- 충북연구원은 지역 현안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설립되었음.
- 현재 충북연구원장 1명, 연구직 28명, 일반직 11명으로 총 40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4년 9월말 기준).

#### <충북연구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년도	구분	구분	정원	현원	비고
2021년		원장	1	1	43/43
		연구직	30	30	
		일반직	12	12	
2022년		원장	1	1	46/43
		연구직	33	30	
		일반직	12	12	
2023년		원장	1	1	46/40
		연구직	33	27	
		일반직	12	12	
2024년		원장	1	1	46/40
		연구직	33	28	
		일반직	12	11	

- 2024년 9월말 기준 137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1명당 평균 4.8건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상임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총 691건임.

## 〈충북연구원 연구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계	1인 평균 수행건수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	수탁과제	정책과제
2020년	132	4.4	24	25	30(8)	53(31)
2021년	147	4.9	25	18	49(17)	55(30)
2022년	135	5.13	25	19	41(14)	50(30)
2023년	140	5.18	27	21	48(20)	44(29)
2024년 (9월말 기준)	137	4.8	23	21	43(14)	44(29)
합 계	691	4.97	101	83	211(73)	246(149)

※ ( )는 도의뢰 과제 건수

###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sup>1)</sup>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sup>2)</sup>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충북연구원은 충북 지역의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해 왔음.
- 충북연구원 대상 출연금 규모는 총 48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45억6천7백만원 대비 5.59%, 2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연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1)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제6조(운영경비)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충북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안)	증감
충북연구원 운영	4,217,400	4,473,000	255,600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350,000	350,000	-
출연금 계	4,567,400	4,823,000	

### 〈충북연구원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 1) 세입 개요 (자체수입 + 출연금)

(단위 : 천원)

과목	2025년	2024년	증감	
합 계	6,102,591	5,888,456	214,135	
자체수입	소 계	1,629,591	1,671,056	△41,465
	예금이자수익	20,000	20,000	-
	수탁과제전입금	797,335	726,635	70,700
	보조사업전입금	41,200	57,000	△15,800
	공투센터전입금수익	10,000	90,894	△80,894
	기금이자전입금수익	69,096	87,567	△18,471
	기타영업외수익	6,000	3,000	3,000
	순세계잉여금	685,960	685,960	-
의존수입				
출연금	4,473,000	4,217,400	255,600	

## 2) 세출 개요 (필요경비)

(단위 : 천원)

과 목			2025년	2024년	증감
합 계			6,102,591	5,888,456	214,135
사 업 비 용	목적사업비	소 계	669,997	773,853	-103,856
		자 체 사 업	239,600	258,800	-19,200
		기 획 사 업	430,397	515,053	-84,656
	일반관리비	소 계	5,353,314	5,061,440	291,874
		인 건 비	3,942,536	3,757,320	185,216
		물 건 비	1,084,138	945,159	138,979
		경 상 이 전	326,640	358,961	-32,321
	예 비 비	예 비 비	32,063	19,797	12,266
자 본 적 출	공기구비품	자 산 취 득 비	47,217	33,366	13,851

### 다. 종합 검토의견

- 충북연구원은 충북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의 개발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북연구원은 세입에 있어서 출연금 및 수탁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198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재)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됨.
-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연구원’)으로 변경되고(198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1986.5)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됨.
- 연구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평가 및 연구,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충청북도의 출연 요청액은 전년도와 같은 250백만원이며, 출연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출연금 집행계획(안)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합 계	250,000	
소 계(80%)	200,000	
인 건 비	200,000	•연구원 총액인건비(71억원) 2.7%
소 계(14%)	35,000	
연구사업비	정책연구과제	10,000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시도현안과제	9,000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
	학술행사 등	8,000 •국내·외 세미나, 지방의정아카데미, 유관기관 및 시도연구원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
	발간사업 등	8,000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등
소 계(6%)	15,000	
일반운영비	15,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산운영, 교육훈련, 시설비 및 청사관리비 등

## 나. 검토의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sup>3)</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 ※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연구와 정책이슈리포트를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 정책지원사업 현황〉

구분	연도	연구명
정책연구 과제 (시도별1건)		◆ 광역 시·도에 국한된 지역정책 중심의 연구에 더해 자치단체 간 상생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공통 현안을 연구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021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
	2022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2023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2024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이슈 리포트 (시도별1건)		◆ 자치단체별 현안이슈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
	2020	청년수당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 방안
	2021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
	2022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2023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2024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시·도별 재정력, 인구수, 시·군수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시·도 공동 출연 : 각 250백만원(세종시 150백만원)

###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가.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경영지도·자문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sup>4)</sup>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임.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sup>5)</sup>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

4)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2~3항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8항 생략)

○ 2025년 출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60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도별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4	2025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2	1,002	-	9.6230	-	498	377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0263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17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584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11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6030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039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36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842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970	1	24	30	3	36
충청북도	60	60	-	0.5284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082	2	30	33	3	36
전북특별자치도	54	54	-	0.4643	1	24	20	2	30
전라남도	54	54	-	0.451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3989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440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나.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임직원에게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4 한국지방세연구원

#####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sup>6)</sup>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sup>7)</sup>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sup>8)</sup>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6)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 충청북도 출연금 내역(2024~2025년) >

(단위: 천원)

자치 단체명	산출기초		출연금		
	'22년 결산 보통세(A)	'23년 결산 보통세(B)	'24년 출연금 ((A)*1.2/100 00)	'25년 출연금 ((B)*1.2/100 00)	증감내역
소 계	3,250,383,776	3,170,111,638	390,046	380,413	△9,633
<b>본청</b>	1,626,565,832	1,572,295,728	195,188	188,675	△6,513
청주시	865,197,051	813,001,593	103,824	97,560	△6,264
충주시	178,691,431	177,608,132	21,443	21,313	△130
제천시	100,877,929	100,796,354	12,105	12,096	△9
보은군	30,047,378	32,952,242	3,606	3,954	348
옥천군	40,423,041	41,514,020	4,851	4,982	131
영동군	34,533,801	34,701,962	4,144	4,164	20
증평군	41,468,065	46,028,229	4,976	5,523	547
진천군	126,324,027	134,395,973	15,159	16,128	969
괴산군	31,991,710	32,005,115	3,839	3,841	2
음성군	145,306,585	154,827,753	17,437	18,579	1,142
단양군	28,956,926	29,984,537	3,474	3,598	124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 1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현황

□ 연구과제 수행 : 총 1,271건 (2011년~2024년)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지방세 과세표준제도, 세외수입 제도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정기 수요조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현 관심도가 높은 수시 요구사항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수행

### <연도별 과제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1~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계	1,271	256	104	100	113	97	117	133	103	120	128
기본	109	39	12	10	6	9	4	4	5	5	15
정책	542	124	41	47	56	46	64 (총북1)	37 (총북1)	40 (총북2)	45	42
기타	620	93	51	43	51	42	49 (총북2)	92 (총북4)	58 (총북1)	70 (총북3)	71 (총북3)

□ 최근 5개년 시도별 연구과제 과제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		2022년		2023년		2024년(7월 기준)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계	119	64	75	54	124	59	132	66	127	76
서울	16	9	9	6	18	13	37	13	27	17
대구	2	2	2	2	3	2	5	3	6	3
부산	9	6	8	5	5	1	10	6	7	5
인천	8	6	8	6	10	4	11	8	10	6
광주	8	0	7	4	9	2	12	6	14	3
대전	6	1	5	5	7	3	4	3	5	3
울산	1	1	1	0	1	0	2	2	2	2
세종	2	1	3	1	5	1	4	1	4	1
경기	32	18	9	6	25	10	9	9	20	13
강원	4	1	4	3	8	5	12	4	6	3
<b>총북</b>	<b>7</b>	<b>3</b>	<b>7</b>	<b>5</b>	<b>12</b>	<b>3</b>	<b>4</b>	<b>3</b>	<b>6</b>	<b>3</b>
충남	5	3	2	2	5	4	8	1	4	3
전북	4	2	3	2	4	1	3	2	2	2
전남	2	2	0	0	4	2	4	1	3	2
경북	7	4	2	2	4	4	3	2	3	3
경남	6	4	2	2	2	2	2	1	4	4
제주	0	1	3	3	2	2	2	1	4	3

**참고 2**

**전국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2025년)**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합계	광역단체	기초단체			
			기초소계	시	군	구
소 계	12,415,084	8,067,039	4,348,045	2,861,167	497,128	989,750
서울	2,926,927	2,429,864	497,063	-	-	497,063
부산	722,470	561,931	160,540	-	20,493	140,047
대구	465,331	353,670	111,661	-	29,823	81,838
인천	645,304	510,166	135,138	-	8,613	126,525
광주	270,831	221,230	49,601	-	-	49,601
대전	274,040	219,671	54,369	-	-	54,369
울산	274,441	186,821	87,620	-	47,313	40,307
세종	85,927	85,927	-	-	-	-
경기	3,127,820	1,447,568	1,680,252	1,653,161	27,091	-
강원	341,251	200,847	140,404	99,166	41,238	-
<b>충북</b>	<b>380,413</b>	<b>188,675</b>	<b>191,738</b>	<b>130,969</b>	<b>60,769</b>	-
충남	575,814	297,783	278,031	233,161	44,870	-
전북	370,295	210,221	160,074	123,402	36,672	-
전남	455,855	255,875	199,980	123,068	76,912	-
경북	581,653	303,484	278,169	225,012	53,157	-
경남	710,545	387,140	323,405	273,228	50,177	-
제주	206,166	206,166	-	-	-	-